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0
----------	-----

발의연월일 : 2020. 6. 22.

발 의 자 : 박 정 · 강병원 · 김희재  
김경만 · 박성준 · 김영호  
이용빈 · 유동수 · 윤후덕  
송옥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되어 구성요소 중 90%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 가능함에도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모듈은 현재 대부분 매립 처분되고 있는 실정임.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모듈의 발생량은 2016년 39톤, 2022년 1,612톤, 2027년 5,802톤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모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태양광 모듈(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기 위하여 다수의 태양전지를 연결한 판을 말한다)의 재활용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2.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
  3. 태양광 폐모듈 수거 체계 등 재활용 제도 연구
  4. 그 밖에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활용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31조의2(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태양광 모듈(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기 위하여 다수의 태양전지를 연결한 판을 말한다)의 재활용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li> <li>2.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상용화</li> <li>3. 태양광 폐모듈 수거 체계 등 재활용 제도 연구</li> <li>4. 그 밖에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li> </ol>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활</p>

용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